



## 대기환경보전법, 수도법 등 9개 개정 법률안

환경부 소관 대기환경보전법, 수도법, 먹는물관리법 등 9개 개정 법률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### |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 |

#### 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시행일 : 공포후 1년) (환경부 대기정책과 ☎ 2110-6775)

- 불법연료 및 첨가제의 대량 유통에 따른 대기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“자동차연료 및 첨가제의 사전검사제 도입” (안 제41조 제1항)
-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자동차제작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“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보고제도 도입” (안 제34조의3 신설)
- 배출가스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소유주가 개선명령을 이행하고 이의 개선결과를 직접 시장·군수·구청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확인검사대행자가 보고 (안 제38조 제4항 신설)

#### ■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(시행일 : 공포후 6개 월) (환경부 수도정책과 ☎ 2110-6875)

- 정수시설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“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제도의 도입” (안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 신설)
- 일반수도사업자는 옥내급수관 등 급수설비의 상태 및 수질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결과 시설개선을 권고함과 동시에 시설개량

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“급수설비 관리제도의 도입”(안 제17조)

-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“수돗물 정보공개 제도의 도입”(안 제18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)

#### 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시행일 : 공포 후 6월) (환경부 토양자하수과 ☎ 2110-6768)

- 해양심층수 등 다양한 원수를 이용한 먹는물이 국제적으로 제조·판매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“먹는물에 먹는 해양심층수 추가” (안 제3조제1호, 안 제3조제3호의2 신설)
- 정수기제조업자 등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·운영하도록하는 “소비자보호센터의 설치·운영” (안 제35조의2 신설)
- 샘물을 이용하는 청량음료, 주류 등 그 밖의 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방식을 개선하는 “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율 조정” (안 제28조제1항)

#### 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시행일 : 공포후 6월)

- (환경부 환경경제과 ☎ 2110-6686)
- 환경컨설팅업의 체계적인 지원·육성을 위하여 “환경컨설팅회사의 자율등록제 도입”(안 제19조의4 신설)

## 대기환경보전법, 수도법 등 9개 개정 법률안

- 정부가 개발된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할 수 있는 사업에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해외사무소 건립을 포함 (안 제6조제2항제4호 신설)

- 생활소음·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·진동을 발생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 (안 제61조제1항 제3호의3 신설)

### 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(시행일 : 공포후 6월)

(환경부 자원재활용과 ☎2110-6953)

- 대형폐기물의 환경친화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위하여 각 시·군·구별로 재활용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·운영하도록 함 (안 제13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신설)
- 빈용기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도·소매업자에게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(안 제22조의2 신설)

### 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시행일 : 공포후 6월)

(환경부 생활폐기물과 ☎)

- 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수도권매립지내 주민편익시설인 공원시설·문화시설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(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신설)

### 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시행일 : 공포후 3월)

(환경부 유역제도과 ☎2110-6837)

- 한강 수계 수변구역 안에서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시설에 『주택법』에 따른 공동주택을 포함시킴 (안 제5조제1항제4호 신설)

### ■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(시행일 : 공포일)

(환경부 산업폐기물과 ☎2110-6944)

- 건설폐기물의 수집·운반·보관·처리기준 이외 배출에 대한 근거를 마련 (안 제13조)
- 『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』 적용을 받는 발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도록 하되, 분담이행방식은 폐지함 (안 제15조제1항)

### ■ 소음·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(시행일 : 공포후 3월) (환경부 생활공해과 ☎2110-6814)

- 환경부장관이 교통소음·진동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당해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시장·군수에게 교통소음·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28조제2항 신설)

\* 법률안 중 일부를 게재하였으므로 법률안 전문을 보시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부 홈페이지 ([www.me.go.kr](http://www.me.go.kr))→알림마당→공지/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